

<1 차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의 목표

- 인명존중(안전관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도주의이다)
- 경영경제(안전보건은 손실관리 차원의 기업경영 기법이다)
- 사회적 신뢰(안전한 직장은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게 한다)

*재해조사의 원칙

- 3E, 4M에 따라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 3E는 관리적 원인,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이며, 4M은 인적 요인, 기계적 요인, 작업적요인, 관리적 요인이다.
-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안전관리

- 안전관리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직적인 일련의 조치를 뜻한다.
-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작업 중지

-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취한 후 작업 재개 - 근로 중 급박 위험시 대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
- 작업 중지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세 가지: ①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 ②복잡/다양성, ③강행성/규정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두고 있다.

- *업무상 부상 등에 의해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산재법 제52조).

***직업재활급여**

- 직업재활급여는 요양이 끝난 재해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보험급여이다.

***업무상 재해 사례**

- 아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 중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로 인한 사고 - 출장 중 정상적인 경로를 가다가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외출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차시>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

1.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의 주요 흐름

- 스트레스원(stressors)을 제거하는 방향
직업성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둠
- 개인의 대응전략에 초점을 두는 방향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처방업을 교육시키는 것 등이 포함

2. 직무스트레스 관리시 직무 외적 스트레스 요인

- 조직 외적인 스트레스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만 개별 업무 또는 조직 차원을 뛰어넘는 상황의 것들로 지역사회, 고용불안, 경력에 대한 요구사항 등
- 비직업성 스트레스 요인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 요인들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처한 환경 등

3.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조직 개입의 장점

- 치료보다 예방이 좋음
- 1차 예방을 고려할 때 원인은 조직 수준에서 고치는 것이 좋음
- 개인적 수준의 문제접근은 낙인화 또는 주변화 우려
- 개인적 접근의 경우 단기적 처방이 되기 쉬움
- 물론 접근이 쉽지 않고 (비현실적인 경우가 간혹 있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다른 갈등을 러오기도 함

4. 직무스트레스의 개인적 접근기법

- 개인적 접근 기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부서 및 조직 전체 차원에서 스트레스 문제를 공유하고 시의 적절하게 기법을 보급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3 차시> 근로자 건강진단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검진

- 검진은 나 자신의 건강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므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또 한 검진종류에 따라 혈액, 요, 청력 등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이므로 해당되는 항목은 모두 실시한다.
- 배치전검진: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다.
- 1차 검진: 일반검진 대상자 모두가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이다. 특수검진: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 수시건강진단: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애의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 임시건강진단 : 직업병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실시한다.

*1차 검진

- 일반검진 대상자 모두가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이다.

*수시건강진단

-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애의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소음성 난청**

- 소음성 난청은 귀 쪽이라 청력검사와 연관이 있다.

***흉부 X-ray 검사**

- 흉부 X-ray는 폐와 심장의 이상을 진단하는 검사로 심장비대, 진폐증, 결핵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영구적 작업제한**

- 건강장애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애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건강진단**

- 자기 스스로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때 의사의 진찰이나 의학적 검사를 통해 신체적인 이상 소견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건강관리 방법. 특히, 근로자들은 작업환경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도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건강진단 판정 구분**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C : 질병으로 진단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D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판정할 경우 일반 건강진단 결과는 A, C, D, R로 구분하며, 특수 건강진단 결과는 A, C, D로 구분해 판정한다.

***일반건강진단**

-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의 고혈압, 당뇨병 등 일반적인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모든 근로자는 일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물질별로 6~24개월 주기로 실시하며, 소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한다.

- 특수건강 검진은 노동부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 1차 검사는 유해인자에 대한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이다.

- 직업력 및 노출력을 파악한다.

***배치 전 건강 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확보해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적합성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추후 업무상 질병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수시 건강 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애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임시 건강 진단**

- 직업병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실시한다.

*** 감정노동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

- 감정노동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빈도, 주의성, 다양성, 부조화가 있다.

*** 감정노동의 특성**

- 직업성 고객을 대하는 업무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와 같은 감정노동 고위험 직업군의 경우 고객과 대면과정에서 감정 조절 자체가 업무성과와 연관되어 있다.

*** 감정노동과 신체 건강영향**

- 근무시간 동안 손님 응대를 위해 계속 긴장된 상태가 유지된다.

- 직무스트레스의 건강영향으로 알려져 있는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소화기질환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 유발한다.

-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빨리 뛰고 혈압은 높게 유지된다.

- 적절히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신체건강 이상을 초래한다.

*** 감정노동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차원의 관리**

- 개인 차원의 관리로는 명상, 복식호흡법, 근육이완법,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자신의 감정 털어놓기 등이 있다.

- 근육이완법은 감정노동에 대해 개인 차원의 관리 방안 중 근육에 주의를 집중시켜 불필요한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 감정노동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차원의 관리**

- 감정노동을 관리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고객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이야기만 듣거나 관리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질책을 하지 않는다.

*** 감정노동의 직업군**

- 감정노동의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콜센터 상담원, 마트 및 백화점 종사자, 요양 보호사와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이 있다.

***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신체적 장애의 종류**

- 고혈압
- 편두통
- 위경련

***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 일이 바빠서 휴식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 바깥 공기를 쉼기 어려운 근무환경이다.
- 휴식공간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 오랫동안 서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갈등**

-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갈등에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친절해야 하는 감정노동이며 실적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

-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한다.
- 교대 근무 관리를 한다.
- 근육이완법을 실시한다.

***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요구**

- 직무 요구의 내용으로는 매출에 대한 압박, 업무시간 내내 자신이 업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주 바뀌는 업무시간 및 장시간 노동, 교대 근무가 있다.

*** 직무 스트레스와 직장 문화**

- 소속회사와 근무하는 장소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다.
-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받는 경우가 있다.
- 고객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받는 경우가 있다.

- 외모와 연령, 결혼 여부에 따른 차별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 회사에서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

- 회사에서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사업주 부담의 증가 등이 있다.

<4 차시> MSDS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MSDS 제도의 도입 배경**

- 근로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자

***GHS**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n Classification and Labeling for Chemicals)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GHS 경고표지 부착 방법**

-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유해,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GH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화학물질을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 함유제제 단위로 용기 및 포장에 인쇄물 등을 부착한다.
-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GHS의 이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 위험성 정보 전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환경보호가 강화
- 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제공
-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용이
- 화학물질을 중복해서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

<5 차시> 작업환경측정 및 환경관리, MSDS 관리

1. 유해화학 물질 근로자 알 권리

● MSDS 제도의 도입배경

-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를 위해 예방과 사고 시 신속 대처
-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
- 국가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 대두
-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

● MSDS 기재사항 16가지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 위험성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 요령
-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 취급 및 저장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 시 주의 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사항

- MSDS 확보 및 비치
화학물질 판매처에서 받아서 비치한다.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 근로자에 대한 교육
MSDS의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시켜 직업환경관리, 올바른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GHS

● GHS란?

-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n Classification and Labeling for Chemicals)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 제도실시 배경

- 화학물질의 대량 사용 : 인간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유해, 위험성 화학물질의 대량사용
- 국가별 또는 자국 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다른 분류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혼동된 정보 전달 우려
- 중복된 경고 표시 및 MSDS

● 작용원칙

- GHS는 모든 유해, 위험성 화학물질에 적용된다
- 경고표지 및 MSDS를 포함한 모든 GHS 요소가 적용된다
- 특히 작업장 근로자의 경우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교육이 강조된다

● GHS 경고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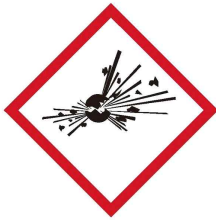
- 구성
 - (1) 경고표지요소
 - 명칭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유해, 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행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정보
- 공급자 정보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2) 경고표지 요소별 작성방법

- 명칭
화학물질 또는 제제의 명칭을 기재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
- 그림문자
형태 및 색상 - 정마름꼴의 적색 테두리(부득이한 경우 흑색 테두리)와 그 내부에 유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흑색 심벌로 구성

알고 사용하는 GHS SYMBOLS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인화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자기발열성
유기과산화물



급성독성
• 삼키면 치명적임
•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 흡입하면 치명적임



호흡기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표적 장기독성



수생환경 유해성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고독성이 있음



산화성



고압가스



금속부식성, 피부부식성
심한눈손상성



경고

2.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체계적 관리 방안

• 화학물질 소분 용기 경고표지 표시(부착) 기준

구분	내용
경고표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 5(경고표지 방법 및 기재항목) • 표시기준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해당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단, 용기에 이미 경고표지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경고표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화학물질 단위로 경고표지 작성 •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 • 유해, 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표시
경고표지 포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 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확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실에서 경고표지 수령 및 기재사항 기록 후 해당 용기에 부착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MSDS 작성 및 인쇄 후 해당 용기에 부착 -이 때 해당 용기 규격과 용량에 비례하여 부착

<6 차시> 금연교육 및 건강진단제도

1. 근로자 건강진단의 개념

* 사업장 건강진단의 의미

-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해로움을 찾아내어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 >> 건강영향평가!!
- 정상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애나 초기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

2. 건강검진 종류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사무직 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일반부서	유해부서
작업에 배치하기 전			배치 전 건강진단
다른 작업으로 배치를 전환할 때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개월·1년·2년)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 시			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퇴직 후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1년)

* 건강검진 판정

판정구분	판정기준
정상A	1차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경계)	1차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일반질환 의심	1차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고혈압·당뇨병질환 의심 (2차검진 대상자)	1차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유질환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
------	---

3. 특수 건강진단

* 일반 건강진단

-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 특수 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자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 임시 건강진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a.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b.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 유기화합물 - 108종
2. 금속류 - 19종
3. 산 및 알칼리류 - 8종
4. 가스상태 물질류 - 14종
5.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 13종
6. 금속가공유 - 1종

- 7. 분진 - 6종
- 8. 물리적인자 - 8종
- 9. 야간작업 - 2종

***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기준**

-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점에서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건강진단 대상자로 정하고 이 때 노출된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선정
- 작업환경 측정결과 작업공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려한 대상자 선정 및 대상 유해인자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

<7 차시> 근로자 응급처치와 의약품 관리

***비발열성 두통 치료**

- 감염성(감기 등)이 아닌 소화불량, 스트레스, 빈혈, 생리통 기타 다양한 증상에 따른 2차적 증상으로 발열이 없는 두통을 말한다.
- 발열이 없더라도 해열진통제의 사용 가능하다.
- 소화불량성 두통인 경우 손발이 차거나, 열이 전혀 없으면서 두통을 호소 (소화불량성 두통 처치) 복부를 온찜질로 찜질한다.

***현기증(vertigo)**

- 회전감각으로 안구진탕과 조화운동불능이 동반한다.
- 일반적으로 말초전정이상에 의한다.
- 중추뇌간병변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

***비출혈 발생시 응급처치**

- 잇입술과 잇몸 사이에 등글게 말은 거즈를 놓는다.
- 코로 손가락을 눌러 압력을 가한다.
- 찬 수건이나 얼음주머니를 코 위에 댄다.

***골절 발생 시 응급처치**

- 치면적 상황 해결 후 골절부위 고정, 후송한다.

- 개방성 골절 시 창상처치 후 골절 처치한다.
- 심하게 각이 진 경우 가능하면 바로 편다.

<8 차시>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

*교통사고의 대비 요령

-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 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해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여하지 말고 사고현장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붕괴사고에 대한 대비 방법

-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린다.
-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 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성냥이나 스토브 등을 켜지 말고 손전등을 사용해야 한다.

*수상안전

- 레저 활동을 할 경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 활동 전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 중에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기상 불량 시 무리한 레저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천둥번개가 칠 때에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 레저 활동 전에 레저기구의 연료가 충분한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비상연락 수단과 조난신호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바다에서는 휴대폰이나 다른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